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개별신용거래)

■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홍콩상하이은행 _____ 앞

년 월 일

본인은 홍콩상하이은행 _____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 1 조 (거래조건) :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표시합니다)

대출금액	금 원정(₩)		대출기간	년										
대출종류	거래구분													
대출개시일	년	월	일	대출기간만료일	년	월								
대출이자율	□고정금리여신(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 계용)) (제3조제2항제1호 선택)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연 %												
	□변동금리여신(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가 계용)) (제3조제2항제2호 선택)	□은행내부기준 금리부여신	은행내부기준금리+ ()%			금리변동주기								
		□CD91일물기준 금리부여신	91일물 CD유통수익률+ ()%			□대출개시일로부터 매()개월, □최초 이자납입일로부터 매 ()개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형여신	□대출개시일, □최초이자납입일로부터()년간 고 정금리()%를 적용하며 이후 은행 내부기준금리+()% 적용			□고정금리기간종료일로부터 매()개월								
		□수신(신탁) 금리부여신	수신(신탁)금리+()%			□기타()								
지연배상금률	□ 대출이자율+()%													
	□ 연체기간이 ()개월 이내에는 ()%, ()개월 이내에는 ()%, ()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를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 기타()													
※ 단, 지연배상금률은 최고연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변동금리여신의 경우에도 원리금 납입이 4회(3개월)이상 연체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은행이 채권보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지연배상 금률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이자율 및 지연배상금률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대출실행방법	□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월 이내에서 매() 개월마다 분할 실행합니다.													
	□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월 이내에서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필요 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 기타 ()													

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제1조의 대출이자율은 다음의 산출기준에 따라 변동되기로 합니다 .

① “은행내부기준금리부여신”이란 은행에서 고시하는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대출개시일과 그 날로부터 제1조 대출이자율에서 약정한 금리변동주기에 해당하는 날 각각에 대해 은행이 고시한 은행내부기준금리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율은 제1조 대출이자율에서 약정한 금리변동주기마다 별도의 통보없이 변경하기로 합니다. 은행내부기준금리는 변동주기에 따라 달리 결정됩니다. 즉, 변동주기가 1일인 경우에는 전영업일의 은행간 실제 콜거래수익률이 고려되고 변동주기가 1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민간채권평가사(한국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KIS채권평가)가 고시하는 통화안정증권 유통수익률에 은행의 예상 조달비용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은행의 조달원가는 가변적이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내부기준금리는 임상 또는 불법하거나 시장금리 하락폭에 비해 작게 인하될 수 있으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은행내부기준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본항에 따른 적용금리 변경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에 의한 대출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후 1개월 내에 변경전 이율로 채무전액을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대출 해지의사 통보 후 1개월 내에 채무전액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변경된 대출이자율에 동의하고, 해지의사를 최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② CD91일물 기준금리부여신이란 대출실행일과 변동주기에 따른 금리변경적용일 각각에 대해 전영업일자로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고시하는 CD 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15시 30분 고시)을 기준으로 적용금리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출이자율은 제1조 대출이자율에서 약정한 금리변동주기마다 별도의 통보없이 변경되기도 합니다.

③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혼합형 여신이란 제1조 대출이자율에서 고정금리를 적용하기로 약정한 기간까지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그 이후 고정금리 적용이 완료되어 은행내부기준금리 적용시에는 고객과 별도의 약정없이 본 약정서만으로 은행에서 자동으로 은행내부기준금리부여신으로 변경합니다. 이 때 고정금리는 금리고정기간별 은행의 예상 또는 실제조달원가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④ 수신금리부여신이란 고객의 예/적/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으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된 경우 대출이자율을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제 3 조 (추가대출)

제1조의 거래조건에도 불구하고 추가대출거래신청서을 작성할 경우 다음과 같이 추가대출을 신청할 수 있기도 합니다.

- ① 추가대출한도는 최초 대출개시일로부터 추가대출거래를 신청한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중도상환한 금액을 한도로 하되, 추가대출 신청일 현재 최초 대출금 전액이 상환되거나 당초 상환계획에 따른 상환 금액의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하기로 합니다.
- ② 추가대출 신청은 은행 방문 또는 유선 (전화, 팩시밀리)연락에 의해 가능하나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제3자(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추가대출신청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 ③ 추가대출금의 거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이자율, 대출기간만료일, 자연배상금률, 대출이자율 및 자연배상금률의 계산방법, 상환방법, 이자 지급방법, 담보제공 등은 이 대출약정서 제1조의 거래조건과 동일하며, 기타 이 약정서의 제 조항이 추가대출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2. 본인의 신청 후 은행은 대출을 승인하는 즉시 추가 대출신청서상의 지정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합니다.

제 4 조 (대출실행) .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이 약정서에 의한 대출은 대출개시일까지 다음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실행됩니다. 다만, 은행은 다음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본인 및 담보제공자가 이 약정서에 의한 대출 및 장래 발생할 은행에 대한 채무이행을 위해 담보를 제공키로 한 경우, 은행 소정기준에 따라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및 예·적금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질권설정 등 제반 담보 제공이 완료될 것.
- ② 담보건물에 대하여 은행이 인정할 수 있는 종류의 보험을 가입하고 은행 앞으로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이 완료될 것.
- ③ 지급불능, 파산, 회의신청,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신청 등 본인의 신용악화상태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 ④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따른 기한전 채무변제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 ⑤ 매입하기로 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할 것(주택구입대출의 경우에 한합니다).
- ⑥ 은행 소정의 채권서류가 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작성, 제출되었을 것.

제 5 조 (중도상환)

- ① 본인은 제1조에서 정한 대출금의 상환기일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②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을 포함하여 이하 같습니다)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금액 \times 해당기간 적용 중도상환수수료율 \times (잔존일수 \div 대출기간)으로 합니다.
 1. 잔존일수는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에서 중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대출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3. 대출개시일부터 약정기일까지의 일수가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째되는 일을 약정기일로 합니다.
- ④ 위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니다.

1. 은행의 채권확보 및 회수를 위해 상환하게 하는 경우
2.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은행의 일방적인 사정이나 요구에 의해 상환하는 경우
3. 담보물건의 공용수용 등 공익목적 국가사업 추진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상환의 경우
4. ()

제 6 조 (부대채무) .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본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보험료, 감정료, 수입인지대, 기타 법적절차비용 등 대출관련비용을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 본인은 은행이 지출한 비용에 제1조의 대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은행의 청구시 즉시 변제하기로 하며 또한 은행이 이를 대출금에서 공제하여도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 7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대출기간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에 의하여 본인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본인은 계약해지일까지 납부 지체된 대출금 원금, 발생이자 및 동 금액들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합산금액과 본인이 실제 변제할 때까지 동 합산금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은행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 ③ 은행이 채권보전, 채권회수 및 담보권실행 등을 위해 지출한 제반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전항의 손해배상금에 포함됩니다.

제 8 조 (채권의 양도승낙) .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과 다름>

본인은 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유동화 등을 위하여 이 약정서에 의한 대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함에 대하여 미리 승낙합니다.

제 9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 □은행, □ 각 50% 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 10 조 (기타 특약사항)

(본인)

(인 또는 서명)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성명)

(주소)

(인 또는 서명)

- 인지세 납부내역
- 대출금 4천만원 이하 면제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4만원
 - 대출금 1억원 이하 7만원
 - 대출금 10억원 이하 15만원
 - 대출금 10억원 초과 35만원

본인확인 및 인감대조
대한민국 정부 인 지 세 남대문세무서장 후 납 승 인 2002년 26호

